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8년 10월 29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채우진 의원

가.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2)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 3)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시행(안 제6조)
- 4)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안 제7조~안 제8조)

5) 구민의 참여 및 교육, 홍보 실시(안 제9조~안제10조)

3. 검토의견(신준호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검토의견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 벤젠 등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 위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로서 이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구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번 조례 제정은 선제적 조치 사항으로 법제상, 행정상의 입법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음.

현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도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사항도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시행 중에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강남구 등 14개 구에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간으로 미세먼지의 피해 예방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구차원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예·경보 체계를 갖추어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됨.

다만,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민·관의 책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